

[별표 1의3] <개정 2008.2.22>

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(제168조의10제3항관련)

1. 가축별 기준면적

| 구 분           | 사 업  | 가 축<br>두 수 | 축사 및 부대시설    |                | 초지 또는 사료포   |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축사<br>(제곱미터) | 부대시설<br>(제곱미터) | 초지<br>(헥타르) | 사료포<br>(헥타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한우<br>(육우) | 사육사업 | 1두당        | 7.5          | 5              | 0.5         | 0.25         | 말·노새 또는<br>당나귀를 사<br>육하는 경우<br>를 포함한다. |
| 2. 한우<br>(육우) | 비육사업 | 1두당        | 7.5          | 5              | 0.2         | 0.1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유우         | 목장사업 | 1두당        | 11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0.5         | 0.25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양          | 목장사업 | 10두당       | 8            | 3              | 0.5         | 0.25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사슴         | 목장사업 | 10두당       | 66           | 16             | 0.5         | 0.25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토끼         | 사육사업 | 100두당      | 33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0.2         | 0.1          | 친칠라를 사<br>육하는 경우<br>를 포함한다.            |
| 7. 돼지         | 양돈사업 | 5두당        | 50           | 13     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 | 개를 사육하<br>는 경우를 포<br>함한다.              |
| 8. 가금         | 양계사업 | 100수당      | 33           | 16     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밍크         | 사육사업 | 5수당        | 7            | 7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| —            | 여우를 사육<br>하는 경우를<br>포함한다.              |

2. 가축두수

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가.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(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
나.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
다.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